

세종
Law



박준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PROFILE

학력

- 2004-2007 서울 양재고
- 2007-2014 서울대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문학사)
- 2015-201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경력

-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자격

2019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앞서 5월 4일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비율을 높이고, 완속충전시설에서의 장기 주차를 규제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이장섭 의원안과 이학영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을 가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 외에도 7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규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정되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니, 올해로 벌써 17년차인 셈이다.

당시 의안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공업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입법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제정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법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심사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보면 친환경 자동차 중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현재는 ‘수소 전기자동차’로 규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번에 처리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산업 장려책과 충전시설 확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설치·운영하는 기업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 이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8조의2).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화물차운수사업자·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도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였다(안 제11조의3).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장애요소인 충전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돋보인다. 먼저 개정안은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혁신도시 내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11조의2).

그리고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안 제11조의4) 및 이행강제금(안 제11조의 5)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의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단속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의 경우 자동차 충전시설을 일정 범위에서 개방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의2).

이처럼 충전시설 확보를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강제력을 강화하였으며, 충전시설의



단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주체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충전시설 개방과 더불어 충전 및 주차 편의 증대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외에도 국회에는 총 7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배출 중립' 선언과 최근 기업들의 ESG 열풍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친환경 이슈가 상당히 핫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류 중인 법률안의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탄소중립 선언 명문화와 '환경친화적'이라는 용어를 '친환경'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강은미 의원안, 친환경 이륜차를 친환경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하자는 윤준병 의원안·서영교 의원안 등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려면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의 개정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계류 법률안들이 이번 국회 임기 전 통과되어 살아남을지, 또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부활할지 여부도 지켜볼 만하다.

무엇보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어떤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어떻게 법령이 변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